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2022.4.22. 전문개정)

제1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1조(모집시기) 원생은 년 2회 학기별로 선발하되, 대학원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2026.3.13. 개정)

제2조(제출서류) ①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원서와 증명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정해진 기일까지 대학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불이익은 지원자가 부담한다.

[2026.3.13. 본조 개정]

제3조(전형방법)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서류심사는 학사학위과정 성적과 증명서류를 대상으로 하고, 구술시험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업계획서에 따른 수확준비도, 외국어 능력, 추천내용 등을 묻는다. 서류평가시 전일제 여부를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2026.1.20. 개정)

② 대학원장이 승인한 학과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외에 필답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필답고사는 전공과목과 영어 및 제2외국어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필답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2026.1.20. 개정)

③ 예체능계 전공의 전형은 실기고사 또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할 수 있다.(2026.3.13. 개정)

제4조(합격기준) ① 구술시험은 2명 이상 5명 이하(학기별 일반전형 이후 추가로 시행되는 입학전

형의 구술시험은 1명 이상 2명 이하)의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에 그 성적을 합산한다.(2026.1.20. 개정)

② 합격기준은 매 학기 입학정원, 지원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장 교과와 이수

제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학과 전공과목과 대학원 공통과목으로 구성한다.

② 대학원 공통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필수과목을 이수해야만 수료할 수 있다. 다만, 학과 전공과목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필수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

③ 각 학과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원생에게 9학점까지 선수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이수대상 원생은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1. 학부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원생
2. 석사과정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한 원생
3. 편입 전 학과와 다른 학과로 편입학한 원생
4. 소속 변경(전과)한 원생

④ 건축학과 건축학인증제도 이수자의 선수과목과 학점은 따로 정한다.(2025.4.29. 신설)

⑤ 교육과정은 매 학년도 단위로 편성한다.(2025.4.29.

항 이동)

[2026.3.13. 본조 개정]

- 제6조(선수과목 면제 등)** ① 선수과목 이수대상 원생이 전적 학위과정에서 선수과목 중 이미 이수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선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② 건축학인증, 외국인 한국어학습 등 필요한 경우에 대학원장은 학기별 수강신청 범위에서 선수과목 수강으로 추가 학습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026.3.13. 본조 개정]

- 제7조(수강신청)** ① 원생은 매 학기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학과장과 논문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 신청해야 한다.
- ② 원생은 수강신청의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정해진 기일에 수강신청을 정정할 수 있다.
- ③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성적("F" 학점 포함)은 성적기록표에 기록된다.(2025.1.16.자 개정)

[2026.3.13. 본조 개정]

- 제8조(수강과목의 취소)** ① 매 학기 수업개시일로부터 5주 이내 정해진 기간에 수강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다른 교과목을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없다.
- ② 수강을 취소한 교과목은 성적표에 "W"로 표기한다.

[2025.1.16. 본조신설, 2026.3.13. 제7조의2에서 제8조로 개정이동]

- 제9조(강좌담당교원-법률상 가족의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관련)** ① 강좌담당교원-법률상 가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수강을 회피해야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강의수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강좌담당교원은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2024.8.27. 개정)
-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강좌를 담당할 교원은 최종 성적 부여 시에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4.8.27. 개정)

- ③ 강좌담당교원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학원실에서 신고 접수, 자체 조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24.8.27. 신설, 2025.2.12. 개정)

[2026.3.13. 제8조에서 제9조로 개정이동]

- 제10조(재수강)** F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한 교과목의 이미 취득성적은 "R"로 표기하며, 취득학점 및 성적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2026.3.13. 제9조에서 제10조로 개정이동)

- 제11조(교과운영)** ① 교과운영은 학과별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사과정, 전문·특수대학원 및 다른 학과와 합동수업을 할 수 있다.

- ② 수업장소는 각 학과가 개설된 캠퍼스로 하며, 필요시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현장수업을 할 수 있다.

[2026.3.13. 제10조에서 제11조로 개정이동]

- 제12조(무단결석)** 원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낙제("F")로 처리한다.(2026.3.13. 제11조에서 제12조로 개정이동)

- 제13조(교차수강)** 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개설과목은 학기당 6학점까지 교차수강할 수 있다. 다만, 석·박사 공통 개설과목은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다.

- ② 일반대학원 다른 학과 개설과목은 학기당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 ③ 특수대학원과 영상대학원 개설과목은 학기당 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경영전문대학원과 교차수강은 상호 허용된 학과로 제한한다. 이때 수강할 수 있는 총 학점은 9학점 이하로 한다.

- ④ 일반대학원 다른 학과 및 전문·특수대학원과 교차수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026.3.13. 제12조에서 제13조로 개정이동]

제14조(폐강기준) 수강신청 결과 수강생이 2명 이하인 교과목은 폐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전공인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2026.3.13. 제13조에서 제14조로 개정이동)

제15조(연구등록) ①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원생은 수료 이후 다음 학기부터 연속하여 최대 2학기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연구등록 A”라 한다) 연구등록생 신분을 가져야 한다. 이때 연구등록생은 조교 임용이 가능하고, 교내 시설이용 및 연구지원에 있어 수료생에 우선하며, 학생연구자로서 외부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수료생 또는 연구등록 의무기간이 종료된 박사과정 수료생이 학생연구자로서 외부과제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요청에 의해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연구등록 B”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③ 연구등록금은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026.3.13. 제14조에서 제15조로 개정이동]

제16조(수업연한의 단축) ① 석사과정에 신입학한 원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1. 본 대학원 학점 선취제도에 의해 대학원 전공과목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신입생
2. 입학 전에 국내외 일반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신입생

[2026.3.13. 제15조에서 제16조로 개정이동]

제3장 학점인정

제17조(다른 대학원과 학점교류 등) ① 원생이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분야의 학점은 학기당 9학점까지만 본교 대

학원 학점으로 인정한다. 이때 수강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캠퍼스(서울 및 WISE캠퍼스) 간 학점교류는 다른 대학원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2.9.27. 개정)

[2026.3.13. 제16조에서 제17조로 개정이동]

제18조(학위과정 연계) ①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원생이 본교 학사과정 재학 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하여 받은 학점 중 학사과정 졸업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9학점까지만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박사과정 원생이 본교 석사과정 재학 시에 취득한 최저수료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대해서는 동일계열일 경우에 3학점까지만 박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2026.3.13. 제17조에서 제18조로 개정이동]

제19조(편입생의 학점인정 등) ① 편입학한 원생(이하 “편입생”이라 한다)이 편입 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과목 또는 동일계열 과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동일 과목 또는 동일계열 과목 여부는 해당 원생의 논문지도 교수와 학과장이 심사한 후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1. 2학기 편입 : 석사과정 최대 6학점, 박사과정 최대 9학점
2. 3학기 편입 : 석사과정 최대 12학점, 박사과정 최대 18학점

② 제적 또는 자퇴한 사람이 같은 과정에 재입학한 경우에는 재적당시 취득학점을 재입학 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2026.3.13. 제18조에서 제19조로 개정이동]

제20조(학기 중 휴학에 따른 학점인정)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경과한 후에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 임신·출산 및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학할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재량으로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2026.3.13. 제19조에서 제20조로 개정이동)

제21조(현장실습, 창업실습 및 연구프로젝트 학점인정)

- ① 석사과정 원생은 일정기간 현장실습을 수행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석사과정 원생은 전공연계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준비부터 창업까지의 과정을 수행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창업실습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③ 원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기 중에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프로젝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④ 현장실습, 창업실습 및 연구프로젝트 학점은 학기별로 이수학점에 포함하며, 그 인정범위는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2026.3.13. 제20조에서 제21조로 개정·이동]

제4장 전공결정, 휴학 및 복학

제22조(전공 결정과 변경) ① 원생은 입학시에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② 전공변경은 재학 중 1회만 허용되며, 수료 이후에는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

[2026.3.13. 제21조에서 제22조로 개정·이동]

제23조(휴학과 복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nDRIMS를 통해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 ② 일반휴학은 1회에 1학기로 하되, 휴학기간 연장원을 통해 4학기(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 원생이 질병 등을 이유로 학기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질병휴학, 병사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창업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과정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2026.3.13. 제22조에서 제23조로 개정·이동]

<2026.1.20. 삭제(연구휴학과 복학)>

5장 학·석사 연계과정

제24조(정원) 학·석사 연계과정(이하 이 장에서 “연계과정”이라 한다)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안에서 선발한다.(2026.3.13. 개정)

제25조(지원자격) ① 연계과정은 학사과정 5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적 평점평균 3.50 이상으로, 7학기 안에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
2.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 3.50 미만으로, 8학기에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

- ② 연계과정은 학사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만 연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약학대학은 제외)은 연계과정에 지원할 수 없다.

[2026.3.13. 본조 개정]

제26조(제출서류) 연계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실(WISE캠퍼스는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2022.9.27., 2024.5.1., 2025.2.12., 2026.3.13. 개정)

1. 지원서 1부
2. 학과장 추천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제27조(전형방법) 연계과정은 매 학기말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다만, 학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외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2026.3.13. 개정)

제28조(수업연한) 연계과정의 석사과정 수업연한은 1년 6개월로 한다.(2026.3.13. 개정)

제29조(대학원 과목 선수강) ① 연계과정에 선발된 학

사과정 학생은 매 학기 6학점, 총 12학점까지만 석사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학사과정 이수구분은 전공과목으로 한다.

- ② 학사과정 졸업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9학점까지만 대학원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2026.3.13. 본조 개정]

제30조(등록과 취소) ① 연계과정으로 학사과정을 7학기 만에 졸업하는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연계한 대학원 석사과정에 등록하고 입학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사과정을 7학기에 졸업할 수 없고, 8학기까지 등록해야 한다.

1. 석사과정 입학 전에 학·석사연계과정을 포기하였거나 석사과정 신입생으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
2. 학사과정 성적 평점평균이 3.50 미만이거나 그밖에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 ③ 석사과정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입대와 질병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휴학할 수 없다.

- ④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안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학점등록을 할 수 없으며, 4학기 정규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6.3.13. 본조 개정]

제31조(혜택) 연계과정의 학생이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으로 입학하면 석사과정 입학금 전액을 면제한다.(2026.3.13. 개정)

제6장 석·박사 통합과정

제32조(정의) 석박사 통합과정(이하 이 장에서 “통합과정”이라 한다)의 정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2026.3.13. 개정)

제33조(선발) 통합과정은 제1학기에 입학하는 사람은 「학칙」 제24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 ② 제3학기에 입학하는 사람은 본교 동일학과 석사

과정 원생 중에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2026.3.13. 본조 개정]

제34조(수업연한과 학점취득) ①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최소이수학점은 정규과목 54학점으로 한다.(2026.3.13. 개정)

- ② 5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평점평균이 3.5 이상이며,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으로서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2026.1.20. 신설)

제35조(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①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중에서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갖춘 원생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 ②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로 인하여 발생한 인원은 박사과정 정원의 여석으로 한다.

[2026.3.13. 본조 개정]

제36조(논문제출 자격시험) ① 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② 통합과정의 종합시험은 5학기 이상(3학기 입학자는 3학기 이상) 등록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2026.3.13. 본조 개정]

제7장 학사·석박사통합 연계과정

제37조(의의와 정의) 학사·석박사통합 연계과정(이하 이 장에서 “통합연계과정”이라 한다)은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에서 선발한다.(2026.3.13. 개정)

제38조(지원자격) ① 통합연계과정은 학사과정 재학생으로서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50 이상이며, 7학기 안에 정해진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 ② 통합연계과정은 학사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은 통합연계과정에
지원할 수 없다.

[2026.3.13. 본조 개정]

제39조(제출서류) 합연계과정의 지원자는 제26조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2026.3.13. 개정)

제40조(전형방법) 통합연계과정은 매 학기말 서류전
형을 통해 선발한다. 다만, 학과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외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2026.3.13. 개정)

제41조(등록과 취소) ① 통합연계과정으로 7학기 안
에 학사과정을 졸업하는 사람은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등록하고 입학해야 한
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
합연계과정 선정을 취소한다.

1.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전에 이 과정을 포기하
였거나,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으로 등록하지 않
은 사람

2. 학사과정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50 미만
이거나 그밖에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

[2026.3.13. 본조 개정]

제42조(대학원 교과목 선수강) ① 통합연계과정에 선
발된 학사과정 학생은 매 학기 6학점, 총 12학점
까지 대학원 전과정(석사, 석박사, 박사)의 교과
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학사과정 이수구분은 전
공과목으로 한다.

② 학사과정에서 졸업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9학점까지만 대학원 전공학점으로 인정
한다.

[2026.3.13. 본조 개정]

제43조(준용) 그밖에 통합연계과정의 운영에 관해서
는 제5장과 제6장을 준용한다.(2026.3.13. 개정)

제8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44조(구분 및 신청)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원생
은 정해진 기간까지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
다.(2026.3.13. 개정)

③ 외국어시험 시행여부 및 합격에 관한 사항은 각
학과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2026.1.20. 신설)

제45조(외국어시험) ① 2학기 이상 등록한 원생은 외
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
제2외국어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제2외국
어는 이수전공과 같은 시험과목으로 선택할 수
없다.

③ <2026.1.20. 삭제>

④ 외국인의 외국어시험과목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한다. 박사과정에서 제2외국어시험이 부과된 외
국인은 모국어와 같은 시험과목을 선택할 수 없
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
국어시험을 면제한다.(2026.1.20. 개정)

1. 최근 2년 이내의 외국어능력시험에서, 영어시
험의 경우 TOEFL IBT 76점, TOEIC 700점
(TOEIC Speaking IM2), New TEPS 264점,
IELTS 5.5등급 이상, G-TELP LEVEL3 85점
(LEVEL2 64점), OPIc IM2, 한국어시험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5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2024.8.27., 2026.1.20. 개정)

2. 최근 2년 이내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서 5급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3. 국내외 일반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
고, 동일과정을 수료했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

4. 공용어 및 상용어가 영어인 국가에서 학사과
정 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수업 및 학위취득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

5. 국내에서 학사과정 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
나, 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한국어로 진행되었
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의 경우

6. 입학 이후 국제저명 학술지에 영어로 작성된
논문((공동)제1저자로 게재한 경우(2026.1.20.
개정)

[2026.3.13. 본조 개정]

제46조(종합시험) ① 석사과정은 3학기 이상 정규등
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원생으로서 성적 평
점평균이 3.0 이상인 사람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의 추천을 받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논문 청구 전까지 국내의 저명학술지에
서울캠퍼스는 [별표 1], WISE캠퍼스는 [별표 2]
와 같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에는 종합시
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2022.9.27.,
2024.4.29., 2026.6.4. 개정)

② 박사과정의 원생은 학위 논문 청구 전까지 국내의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종합시험
을 대체할 수 있으며, 학과별 논문게재 요건은 서
울캠퍼스는 [별표1], WISE캠퍼스는 [별표2]와
같다. 다만,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원생은 지
도교수와 학과장이 승인한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한다.(2022.9.27. 개정)

③ [별표1]과 [별표2]의 종합시험 합격 대체기준은
원생이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게
재 시 인정한다.(2026.1.20.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종합시험을 응시하는 사람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⑤ 종합시험은 매년 2회 실시하고,과정별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시험과목을 수강하여
“A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학과에서 인
정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에
따라 해당 과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할 수 있
다.(2026.1.20. 개정)

대학원	시험과목 영역	합격과목수	합격기준
석사과정	학과공통 1과목, 전공 1과목 이상	전체 2과목 이하	각 과목 70점 이상
박사과정	학과공통 1과목, 전공 2과목 이상	전체 3과목 이하	각 과목 70점 이상

[2026.3.13. 본조 개정]

제47조(재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026.3.13. 개정)

제9장 학위논문

제48조(논문지도교수 위촉) ① 논문지도교수(이하 이
장에서“지도교수”라 한다)는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춘 본교 재직 교원 중 원생이 신청하면 학과장
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원생은 입학 후 2학기 안에,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교 재직 교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하는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한
에 신청하지 않거나 원생이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이 지도교수
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원생은 지도교수 지정통
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교원을 지도교수로 교체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
다.

③ 원생은 논문작성을 위해 공동지도교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전문가를 공동지도교
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6.1.20.>

⑤ <삭제 2026.1.20.>

[2026.3.13. 본조 개정]

제49조(논문지도교수자격기준) ① 지도교수는 본교 재
직교원으로서 다음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촉제한연령은 65세로 한다.

1. 재직교원

가. 본교 전임교원

나. 박사학위 소지자나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
력을 가진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2. 연구업적기준

계열	기간	기준
인문·사회·	최근 3년	KCI등재지 1편(120점) 또는

예체능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자연·공학·의학	최근 3년	SCIE 1편(300점) 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 연구업적기준에 대한 사항은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연구업적기준은 논문실적으로 한정한다.

- ② 대학원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학과장의 제청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이때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사유, 연구실적 및 연구역량, 논문지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 ③ 논문표절, 연구비 횡령 등 연구윤리 위배나 학생 관련 성추행 등으로 징계가 개시된 교원과 징계처분이 확정된 교원에 대해서는 교내외 인사를 불문하고 학위논문 지도와 심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기간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다만, 학위취득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지도원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2026.6.4. 개정)
- [본조 신설 2026.1.20., 2026.3.13. 제48조의2에서 제49조로 이동]

제50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과 퇴직교원) ① 원생은 전임 지도교수의 동의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2022.9.27., 2026.1.20. 개정)

- ② 전임교원의 퇴직 후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2022.9.27., 2026.1.20. 개정)
1.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있다.
 2. 전임교원인 지도교수가 퇴직 후 2년 안에 비전임교원이나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연장 기간은 논문 완성과 임용기간 만료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한다.

③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퇴직 후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이 완성될때까지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2026.1.20. 개정)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과장 등은 지도교수의 퇴직을 이유로 재직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것을 지도교수와 원생에게 요구할 수 없다.(2026.1.20. 신설)

⑤ WISE캠퍼스는 지도교수 변경과 퇴직교원 운영과 관련하여 각 항에서 정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26.1.20. 신설)

[2026.3.13. 제49조에서 제50조로 이동]

제51조(논문지도 원생 수의 제한과 논문지도) ① 지도교수 1명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원생은 석사과정은 1년에 8명 이내,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1년에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인원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 1명의 지도원생은 석·박사 포함 총 50명(재학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실적 우수자 등 대학원장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이때 원생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재배정하거나 신규 지도를 제한한다.

③ 지도교수는 원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의 표절과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2026.3.13. 제50조에서 제51조로 개정·이동]

제52조(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 ① 원생은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한 학기 이상 수학하거나, 3회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 교과이수, 논문작성 세미나 등 학과 차원의 논문작성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을 포함한다.

[2026.3.13. 제51조에서 제52조로 이동]

제53조((논문제출자격)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원생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사람(다만, 수업연한 단축 과정인 경우 그에 따름)(2026.1.20. 개정)
2.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면서 수료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2026.1.20. 개정)
3. 선수과목 학점을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사람(해당자에 한함)(2026.1.20. 개정)
4.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사람(2026.1.20. 개정)
5.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2026.1.20. 개정)
6.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시행 학과에 한함)(2026.1.20. 신설)
7. 논문 초록발표를 통과한 사람(2026.1.20. 개정)
8.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는 연구등록을 필한 사람(2025.1.16., 2025.2.12., 2026.1.20. 개정)
9. 박사과정의 경우,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사람. 다만, 아래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2026.1.20. 개정)

연구업적	비고
• 인문·사회계열(가정학과 포함) : KCI등재지 1건 이상 • 예·체능계열 : KCI등재지 (등재후보지 포함) 1건 이상 • 아·공·약 의학계열 : SCI(E) / SSCI / SCOPUS 1건 혹은 KCI 2건 이상*	• 주저자/교신저자 • 게재확정 인정

* 아·공·약 의학계열 학과(전공)에 대한 'KCI 2건 이상' 기준의 적용 대상 여부와 신설 학과(협동과정)에 대한 위 기준의 경감 여부는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0.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한 사람(2026.1.20. 개정)

11.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026.1.20. 개정)

② 학과장은 제1항제1호의 기한을 임의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 대학원장은 원생과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2026.3.13. 제52조에서 제53조로 개정·이동]

제54조(초록신청 및 승인) ① 초록발표는 지도교수의 사전 지도를 받아 신청해야 하며 신청시 논문 개요를 nDRIMS에 탑재해야 한다.

② 학과장은 지도교수의 승인 여부, 논문제출 자격요건, 논문개요 탑재여부 등을 확인 후 승인 처리한다.

③ 지도교수와 학과장은 초록발표 자격을 제한할 경우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2026.3.13. 제53조에서 제54조로 개정·이동]

제55조(초록발표) ① 논문을 제출하려는 원생은 논문 초록 및 논문작성계획서(이하 “논문초록등”이라고 한다)를 정해진 기간까지 발표해야 한다.

② 논문초록등의 발표시에는 지도교수, 학과장, 해당학과 교수, 관련 전공분야 연구자 등이 참석하도록 한다.

③ 논문초록등의 발표는 학과장(또는 위임받은 교원)이 진행하며, 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생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2026.3.13. 제54조에서 제55조로 개정·이동]

제56조(초록발표의 판정) ① 학과장(지도교수에게 위임한 경우는 지도교수)은 논문초록발표에 참여한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다만, 참여교수 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판정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지도교수의 의견에 따른다.

② “부”판정을 받은 원생은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부”판정을 받은 원생은 해당 학기에는 학위논문

을 제출할 수 없으며, 이후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정시에 지적을 받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④ 학과장은 최종 판정 후에 초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6.3.13. 제55조에서 제56조로 개정·이동]

제57조(논문작성) ① 학위논문은 [별표 3]의 논문체제 및 제본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②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하고, 한국어 초록과 영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에는 외국어 초록과 한국어 초록을 첨부해야 한다.(2024.12.6. 개정)

[2026.3.13. 제56조에서 제57조로 개정·이동]

제58조(심사용 논문제출) 심사용 논문제출은 석사과정은 매년 5월 또는 11월, 박사과정은 매년 4월 또는 10월에 제출하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정해진 기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실(WISE캠퍼스는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논문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2022.9.27., 2025.2.12. 개정)

1. 석사학위 논문신청의 경우

- 가. 석사학위 신청자격 심사원서(양식) 1부
나. 논문지도확인서 1부
다. 카피킬러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1부
라. 심사용 논문(가제본) 3부

2. 박사학위 논문신청의 경우

- 가. 박사학위 신청자격 심사원서(양식) 1부
나. 논문지도확인서 1부
다. 연구실적인정서(양식) 1부
라. 연구실적물(논문사본) 각 1부
마. 카피킬러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1부
바. 심사용 논문(가제본) 5부

[2026.3.13. 제57조에서 제58조로 개정·이동]

제59조(논문심사위원) ① 논문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교내의 전임교원 또는 제49조의 자격요건과 연구윤리 요건을 갖춘 사람 중 학과장이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위촉을 신청하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2025.4.29. 개정)

- ②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는 3명,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는 5명으로 한다.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내부인사와 외부인사로 구성하며, 외부인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본교 퇴임 전임교원과 현직 비전임교원은 내부인사로 본다.
④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지만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⑤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전 과정을 주도한다. 다만, 심사판정에 관한 의결에서는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⑥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개시 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⑦ 심사위원은 연구윤리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사례발생시 이후 2년간 논문심사를 할 수 없다.

[2026.3.13. 제58조에서 제59조로 개정·이동]

제60조(심사위원 기피) ① 원생은 공정한 심사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심사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원생은 심사원서를 제출할 때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기피신청서를 대학원실에 제출해야 한다.(2025.2.12. 개정)

- ② 대학원장은 접수된 기피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피사유가 인정되면 기피대상자를 학과장에게 통보하고, 학과장은 즉시 새로운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기피신청은 동일 심사기간동안 2회로 제한한다.

[2026.3.13. 제59조에서 제60조로 개정·이동]

제61조(논문심사) 학위논문 심사사항, 심사방법 등 심사기준 및 심사회수, 심사기간 연장, 결과판정, 재심사 등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2026.3.13. 제60조에서 제61조로 이동)

제62조(논문의 수정 등) ① 논문심사에서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가 있을 때, 명백한 심사오류 등이 아닌 한 원생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해야 하며, 제출논문은 수정사항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② 논문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오타자, 인용표기 실수, 단위 착오 등 그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정할 수 있다.

[2026.3.13. 제61조에서 제62조로 개정·이동]

제63조(통과논문의 온라인 등록 및 완제본 제출) ① 원생은 논문심사가 통과되면 매년 12월 말 또는 6월 말에 정해진 기간까지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원문을 온라인 등록하고, 저작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원생은 제1항의 온라인 등록이 승인되면 정해진 논문규격에 따라 논문을 인쇄·제본(이하“완제본”이라 한다)하여 하드커버 완제본 3부(법학 및 불교 계열의 경우에는 4부)를 매년 1월초 또는 7월초에 정해진 기간까지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2026.1.20. 개정)

③ 완제본 원본은 인준지에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다음 대학원에 제출하면 대학원장이 검인한 후에 본인에게 반환한다.

[2026.3.13. 제62조에서 제63조로 개정·이동]

제6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사람 중에서 대학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절차를 마친 사람은 해당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사람 또는 순연된 사람은 다음 학기까지 1회만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③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

경과)”로 처리한다.

[2026.3.13. 제63조에서 제64조로 개정·이동]

제65조(논문심사 등과 관련한 교권과 학습권의 조정) ①

이 장에서 정한 지도교수, 학과장 등의 의무위배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직제한, 승진제한, 수당제한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원생이 이 장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징계에 회부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외에 초록발표, 학점인정, 논문통과, 연구등록 등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2026.3.13. 제64조에서 제65조로 개정·이동]

제10장 석사학위 논문의 대체

제66조(석사학위 논문 대체) ① 석사과정은 학위논문 제출 대신 전공분야별 특성에 따라 학과에서 인정한 산학과제(산학공동연구, 특허, 기술사업화 등), 창작 및 설계, 사례연구, 임상시험 등의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을 통해 심사를 받거나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등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논문 대체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는 학과내규로 대체기준을 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로 대체하는 경우는 학위논문 대체 신청 및 승인 이후의 실적으로 원생이 주저자(제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이때 이 논문은 외국어시험 면제 또는 종합시험 대체합격 등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④ 석사학위 논문 대체 심사는 이 시행세칙에 따른 학위논문 진행절차(지도교수 위촉, 연구계획서 제출, 초록발표, 심사원서 제출 등)를 준용하여 같은 시기에 진행하며, 도서관 납본은 생략할 수 있

다.(2024.2.5. 개정)

[2026.3.13. 제65조에서 제66조로 개정·이동]

제11장 학위수여

제67조(학위수여) ① 원생이 대학원 과정별 수료학점을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 시험(시행 학과에 한함)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면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2026.1.20. 개정)

② 학위수여는 2월과 8월에 하되,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각각 <서식 1> 와 <서식 2>의 학위기로서 수여한다.

[2026.3.13. 제66조에서 제67조로 개정·이동]

제68조(학위취소) ① 학위수여 후 학위논문에서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변조·표절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스스로 학위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학위를 취소한다. 이때 학위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한다.

[2026.3.13. 제67조에서 제68조로 개정·이동]

제69조(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안에 박사논문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026.3.13. 제68조에서 제69조로 개정·이동]

제70조(명예박사학위) ①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받는 자의 공헌과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하되, 「학칙」 제57조의 [별표 4]에 따른다.

②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장의 발의에 의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식 3>의 학위기로서 총장이 수여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는 본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2026.3.13. 제69조에서 제70조로 개정·이동]

제12장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제71조(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의 정의) ① 공동학위(Joint Degree)제도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학위기에 본교와 공동학위를 협정한 대학교(이하 “협정교”라 한다)의 총장이 공동으로 서명한 학위를 받고 각 대학을 모두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복수학위(Dual Degree)제도란 본교와 협정교 대학원에서 각각 별도의 학위기를 받고 각 대학을 모두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6.3.13. 제70조에서 제71조로 개정·이동]

제72조(협정체결) ①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이하 “복수학위”라 한다) 교류협정 대상은 대학원 또는 학과 단위에서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대학으로 한다.

② 교류협정은 본교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③ 협정체결시 협정서의 내용은 교육 관련 법령 및 각 대학의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6.3.13. 제71조에서 제72조로 개정·이동]

제73조(지원자격 및 과정생선발) 공동학위와 복수학위 과정에 지원하는 원생의 자격과 선발절차는 대학원 간 협정서에 따르되, 최소 한 학기 이상 원 소속 대학에서 수학한 원생을 우선으로 한다.

[2026.3.13. 제72조에서 제73조로 개정·이동]

제74조(파견기간 및 등록) ① 복수학위과정생의 파견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서로 같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복수학위과정생은 협정교와 동시에 등록하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라 장학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6.3.13. 제73조에서 제74조로 개정이동]

제75조(학업이수) 복수학위과정생은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복수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대학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2026.3.13. 제74조에서 제75조로 개정이동]

제76조(학점교환 및 인정) ① 본교 복수학위과정생이 파견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졸업 이수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에 파견된 복수학위과정생이 원 소속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졸업 이수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

[2026.3.13. 제75조에서 제76조로 개정이동]

제77조(논문심사) ①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 심사는 각 대학별 학칙에 근거하여 논문심사 절차를 개별로 진행한다.

②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협정교의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때 협정교 교수의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26.3.13. 제76조에서 제77조로 개정이동]

제78조(학위수여) ① 복수학위는 본교 학위수여 요건 및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동시에 충족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복수학위 과정생이 본교 학위수여 기준만을 충족할 경우에는 본교 단독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026.3.13. 제77조에서 제78조로 개정이동]

제13장 장학금

제79조(지급대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국가 또는 본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원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2026.3.13. 제78조에서 제79조로 개정이동)

제80조(선발기준) ① 장학생은 제82조의 장학의 종

류와 지급기준에 따라 대학원장이 선발한다.

②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2025.2.12. 개정)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WISE캠퍼스 장학의 종류, 지급기준,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WISE캠퍼스 일반대학원 장학금 지급내규」를 적용한다.(2026.4.16. 개정)

[2026.3.13. 제79조에서 제80조로 개정이동]

제81조(장학생 선발제한 및 취소) 원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이미 지급된 장학금도 회수할 수 있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휴학생 및 제적생(자퇴 포함)
3. 장학금 지급기준 및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람
4. 장학금 지급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사람

[2026.3.13. 제80조에서 제81조로 개정이동]

제82조(종류와 지급기준) 장학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해당 학기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취소하고, 전액 환수할 수 있다.(2025.9.18. 개정, 2026.3.13. 제81조에서 제82조로 이동)

1. 신입생 장학 :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사람(수혜조건, 장학종류 및 금액은 총장이 정하여 매년 신입생 모집요강에 발표하여 시행한다)
2. 이공계장학 : 공학 및 자연과학계열 전일제 신입생으로 경제사정이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2023.3.27. 신설, 2026.3.13. 제1호의 2에서 제2호로 이동)
3. 조교장학 : 본교 조교로 임용된 사람(구체적인 내용은 「조교임용 규정」에 따른다)(2026.3.13.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4. 고시장학 : 재학 중 국가고등고시와 그에 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2026.3.13.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5. 공로장학 : 본교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2026.3.13.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6. 외국인장학 : 외국인 전형으로 본교 대학원에 입학한 외국인(지급조건 및 장학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23.12.15., 2024.2.5. 개정, 2026.3.13.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6.4.16. 개정)

7. 진학이념구현 장학 : 경제사정이 곤란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승려)으로 조계종 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026.3.13.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8. 대학원학술장학 : 대학원학술상을 수상한 사람(2026.3.13.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9. 동국가족장학 : 본교 교직원(정년퇴직자, 명예 퇴직자 포함)과 그 배우자 및 자녀(2026.1.20. 개정, 2026.3.13.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10. 교외장학 : 출연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출연자의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026.3.13. 제9호에서 제10호로 이동)

11. 산학협력장학금 : 본교와 교류협약을 맺은 산업체, 연구기관(이하 "협약기관")등의 임·직원에게는 정해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2025.9.18. 개정, 2026.3.13. 제10호에서 제11호로 이동)

12. 근로장학 : 교육·연구·실험실습과 관련된 단기간의 근로봉사를 제공한 사람(2026.3.13. 제11호에서 제12호로 이동)

13. 원장장학 :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내외 재원을 통해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2026.3.13. 제12호에서 제13호로 이동)

14. 학생회 공로장학 : 본교 대학원 학생회 집행부에 속하는 재학생과 해당 학기 등록한 연구등록 A 중인 사람(2025.4.29. 신설, 2026.3.13. 제13호에서 제14호로 이동)

제83조(준용) 장학금과 관련하여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부 장학규정」을 준용한

다.(2026.3.13. 제82조에서 제83조로 이동)

제84조(내규) 이 학칙시행세칙 시행에 있어 편입생의 학점인정, 선수과목의 과목별 면제, 타 대학원과의 학점교류, 현장실습창업실습 및 연구프로젝트 학점인정, 외국어시험 면제, 종합시험 논문게재·과목대체 합격 처리에 관한 사항과 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은 운영내규로 정한다.(2026.3.13. 제83조에서 제84조로 이동)

부 칙 (2006.1.25.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내규)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부 칙 (2006. 10. 9.개정)

이 개정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18.개정)

이 개정세칙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4.개정)

이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1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 제47조, 제53는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4.8.개정)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5.23.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3조 제2항은 2009학년도 지원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11.14. 개정)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0조 1호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2.24. 개정)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6. 26 개정)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6.개정)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9년 11월 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0조(장학금 종류와 지급기준)는 2009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9.8. 개정)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0.25.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8조(재입학, 편입학자의 학점 인정)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논문지도비)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1학기 등록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12.27.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0조 및 제53조는 2011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된 업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1.12.2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4조 개정 시행세칙은 2011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04.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2.12.1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3조(수업연한의 단축)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논문제출자격) 및 제54조의 2(학위청구 논문 제출연한)의 경우 기존 재적생은 2013년 3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

부 칙 (2013.2.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21조의 창업

휴학은 2014학년도 1학기 휴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12.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제43조(논문지도교수)의 제3항 제3호는 201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2. 제45조(논문제출자격)의 제1항은 2014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10.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1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2.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약학대학 학석사연계과정이 개설된 2016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5.15.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8.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2학기 장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8.28.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복수 학위 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에 의해 협정을 맺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2.26.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4.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제5조의2(강좌담당교원-가족의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관리)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2. 제45조(논문제출자격)의 제1항은 2014학년

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8.21.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시행당시 기존 재적생에 대한 적용은 학과별 내규로 정하되, 이 경우 논문 대체 실적은 2019년 9월 1일 이후의 연구 실적으로만 심사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34조 석사 통합과정의 최소 이수학점 변경에 대한 내용은 2020년 8월 수료예정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6의2장 학사석박사통합 연계과정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선발한다.

부 칙 (2020.3.18.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4.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등에 따른 휴학적용 특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 예방조치 등으로 인해 정상적 학사참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휴학 조치

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통산 휴학가능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 칙 (2020.8.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10.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7.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개정 전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9.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개정 전 시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4.22.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효과) 이 시행세칙 개정 전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것으로 보고, 기존 시행세칙에 따른 제반 행위의 효과는 이 시행

세칙 시행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내규 등) 이 시행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장이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권한해석) 이 시행세칙 시행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을 결정권자로 본다.

제5조(특별보존) 이 시행세칙 이전의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은 부칙을 포함하여 별도로 영구보존한다.

제6조(효력발생) 2022학년도부터는 이 시행세칙을 시원(始原)규범으로 하여 공표한다.

부 칙 (2022.9.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관 개정(2022.2.8., 2022.4.26.) 및 직제규정 개정(2022.2.24.)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의 부서 명칭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3.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12.1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4.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5.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8.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6. 개정)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2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2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2조(논문제출자격) 및 제56조(논문작성)에 대한 내용은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2.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직제규정 개정(2025.2.12.)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의 부서(장) 명칭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기존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용어 및 표현, 형식 등을 정비한 것이므로 종전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25.4.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8조(논문심사위원)에 대한 개정 내용은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9.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2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1.2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조(전형방법)에 대한 내용은 개정되는 즉시 적용한다.

② 외국어시험 관련 개정 사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외국어시험 TEPS 점수는 규정개정일 즉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학위논문 규격 개정 사항은 개정되는 즉시 적용한다.

④ 연구휴학 폐지에 대한 개정사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제48조의2 제1항2호(연구업적기준) 개정 내용은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3.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부 칙(2026.4.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2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6.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세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학과별 종합시험 합격 대체기준(주지자)

그룹	학과	게재 학술지	석사	박사
인문·사회 (가정학과 포함)	인문사회계 전 학과, 가정학과	KCI 등재지, SCOPUS	1건	2건
	경찰행정학과(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KCI 등재지, SCOPUS	1건	4건
	국어교육학과(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KCI 등재지, SCOPUS	1건	3건
자연과학 공학 (I)	수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수학교육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신재생에너지공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기술창업학과, 핀테크블록체인학과, 자율사물지능학과, VR·AR테크놀로지학과	SSCI, A&HCI, SCIE(Q1-Q2)	1건	1건
자연과학 공학 (II)	물리학과, 화학과, 반도체과학과, 생명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융합표준학과, 재생의공학과, 인공지능학과, 미래전지융합공학과, 시스템반도체학과, 컴퓨터시학과	SSCI, A&HCI, SCIE(Q1-Q2)	1건	2건
예·체능	미술학과, 연극학과, 영화영상학과, 뷰티아트케어학과, 체육학과, 스포츠과학융합학과	KCI 등재지, SCOPUS	1건	2건
의학 약학	한의학과, 의학과, 한의생명협동과정, 약학과(사회약학전공 외), 뇌혈관질환연구의학과	SSCI, A&HCI, SCIE(Q1-Q2)	1건	2건
	약학과(사회약학전공), 제약바이오산업학과	KCI 등재지, SCOPUS	1건	2건

※ KCI 등재지, SCOPUS 게재가 종합시험 합격 대체기준인 학과에서 SSCI, A&HCI, SCIE에 1건 게재한 경우에는 종합시험 대체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

[별표2] WISE캠퍼스 종합시험 합격 대체기준(주지자)

계열	석사	박사
인문, 사회, 예체능	국내저명 학술지게재 1편	국내저명 학술지게재 2편
자연, 공학	국제저명(SCOPUS 이상) 학술지게재 1편	국제저명(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 이내 SCIE) 학술지게재 1편

1. 논문체제

가. 표지

나. 내지

- 1) 내표지
- 2) 인준지

다. 본문

- 1) 국문 논문초록(외국어논문은 외국어초록)
- 2) 목차
- 3) 표 및 그림 목차
- 4) 본문내용
- 5) 참고문헌
- 6) 부록, 색인, 기타 (필요시)
- 7) 영문 abstract(외국어 논문은 국문초록)

2. 논문규격

가. 파일작성 규격

- 1) 워드프로세서 : 아래아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함을 원칙.
- 2) 용지 : A4[210x297mm]
- 3) 용지여백 : 위·아래 여백 40mm(MS워드 5.5cm), 좌·우 여백 40mm(MS워드 4.0cm, 머리말·꼬리말 15mm(MS워드 머리글 4.0cm, 바닥글 2.5cm)
※ 책자제본을 위해 상하좌우 여백을 많이 두었음.
- 4) 본문 줄간격 : 180% ~ 220%, 각주 130% 내외
- 5) 글꼴 : 국·영문 명조 또는 신명조
- 6) 글자 크기 : 본문(11pt), 큰제목(15~16pt), 중간제목(13~14pt), 작은제목(11~12pt), 표제목(11pt), 표내용(10~11pt), 각주(9pt) 등, 필요에 따라 강조체(진하게) 사용 가능

나. 책자제본 규격

- 1) 표지 size : 26.5cm * 19.3cm
- 2) 내표지, 인준지, 본문 size : 25.8cm * 18.5cm
- 3) 지질 : 70파운드(70g/m)이상 모조지
- 4) 인쇄방식 : 양면 또는 단면으로 인쇄
- 5) 표지장정
 - 하드표지 : 흑색으로 하며, 금박인쇄, 클로스 양장제본

3. 학위논문 본문 작성례

가. 국문 논문초록(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외국어로 작성)

3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나. 목차

목차의 세분은 장, 절, 항 등으로 하며, 기호는 1, 1, 가, 1), 가). (1). (가)의 순으로 한다.

다. 표 및 그림 목차

표기순서는 표목차, 그림목차 순서로 하고 표1, 표2,그림1, 그림2,..... 와 같이 표시한다.

라. 본문내용

본문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서론
- 2) 본론
- 3) 결론

마. 각주

각주는 일련번호를 붙이고 해당면 밑, 장후면 또는 논문말미에 종합 기재한다.

바. 참고문헌

논문작성에 이용한 참고문헌은 국내, 국외서적, 논문, 기타의 순으로 그리고 가, 나, 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사. 부록

부록은 부록이라고 쓴 백색 별지를 앞에 붙인다.

아. 영문 abstract(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으로 “논문초록” 작성)

3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자. 세부작성요령

기타 세부사항은 일반논문 작성법 및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작성한다.

<서식 1>

<국문학위기>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였으므로

○ ○ 학 석사의 자격을 인정함

20 년 월 일

동 국 대 학 교 대 학 원 장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동 국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번호 :

<영문학위기>

This diploma makes known that

Dongguk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upon

○ ○ ○(사람이름)

the degree of

○ ○ ○(학위명)

*and the honors, rights and privileges of the degree given by Dongguk University, Korea
in witness whereof the signatures of the President and th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are herewith
affixed this 000 day of 000 in the year of two thousand and nin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President

국문학위기

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였
으므로 ○ ○ 학 박사의 자격을 인정함

논문제목 :

20 년 월 일

동 국 대 학 교 대 학 원 장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동 국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번호 :

This diploma makes known that

Dongguk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upon

○ ○ ○(사람이름)

the degree of

○ ○ ○(학위명)

*and the honors, rights and privileges of the degree given by Dongguk University, Korea
in witness whereof the signatures of the President and th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are herewith
affixed this 000 day of 000 in the year of two thousand and nin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President

<서식 3>

명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분은

공헌하였으므로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본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 ○ 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자 이에 추천함.

20 년 월 일

동 국 대 학 교 대 학 원 장 ○ ○ ○ (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 ○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동 국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번호 :